

<24년 배상책임보험 문제집 정오표>

수정할 페이지	기존내용	변경내용
P12	3. 유도선 및 도선사업법	3. 유선 및 도선사업법
P108 - 각주11)	310만원 × (1-30%) - 140만원 770,000원 보상	310만원 × (1-30%) - 170만원= 470,000원 보상
P121 하단 3. 일실퇴직금	<p><편집과정 중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내용을 첨부할 것></p> <p>방법 ① $[90,750,000원 \times 1 / \{1 + \frac{(0.05 \times 19년)}{0.95} + \frac{(0.05 \times 6개월/12개월)}{0.025}\}]$ $- 32,250,000원] \times 100\% \approx 13,700,000원$</p> <p>방법 ② $[90,750,000원 \times 1 / \{1 + 0.05 \times (19년 + 6개월/12개월)\}]$ $- 32,250,000원] \times 100\% \approx 13,700,000원$</p>	
P207	<p><문제 지문 안에 첨부할 것></p> <p>계산 편의를 위해 매월(1월~12월) 일수는 30일로 산정할 것</p>	
P336	<p><문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할 것></p> <p>-가족수당: 매년 전 근로자 고정급 10만원+자녀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(3인까지) 추가지급 -1월25일: 사용자의 허락하에 민방위훈련권(임금은) 지급됨)</p>	<p>-가족수당: 매년 전 근로자에게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고정지급 + 자녀 수(1인 5만원-자녀 수 최대 3인까지 인정)에 따라 추가지급</p> <p>-1월25일: 사용자의 허락하에 민병위 훈련 참석으로 결근 (임금은 지급됨)</p>
P353	「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판결」 이전 방식을 준용할 것	「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판결」 이전 방식을 준용할 것 ▶ “과실상계 후 공제방식 적용”
P372	부상 및 장애급수 - 장애: 슬관절 상해 7급 , 화상 상해 8급	부상 및 장애급수 - 장애: 슬관절 장애 7급, 화상 장애 8급
P405 하단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액	<p><답안 내용 삭제할 것></p> <p>Ⅱ. 보험자 보상금액 1. 법률상손해배상금 146,582,000원 100만원 (자기부담금) < 한도 2억 ▶ 145,582,000원 보상 2. 비용손해 간접이송비 : 200,000원 보장 Ⅲ. 공단 총 구상금액: 1,530만원</p>	